

계약제도 개선 물꼬... '예산족쇄'에 막히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
추가투입 예산 확보장치 없고...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은
중심제 수준으로 낙찰률 묶고...
업계 "제도 정상작동 미지수"

연초 건설시장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해묵은 과제였던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면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확보 장치가 빠져 있고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에는 가격협상 기준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개정 지침은 올해부터 입찰공고된 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비해 공기 연장사유, 계약금액 조정액의 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공평가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 완료
발주처 행정낭비 줄어든 듯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기관이 낙찰자 선정 시 필요한 시공평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정보를 연고자 감수해야 했던 행정 낭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중)은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CONTEMS-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Management System)과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간 연계 작업이 지난 13일자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 시스템 연계를 건설시공평가 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발주기관이 시공사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문 등을 통해 공단에 요청해야 했다. 공단은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공문 생산, 자료 추출을 위한 인력 소요, 공문 처리 시 정보 유출 우려, 실시간 정보 반영 불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6월 대부분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조달청과 자료연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관련 용역을 추진한 끝에 이번에 연계를 완료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달청뿐 아니라 다른 발주기관과도 계속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춘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다"면서 "신속, 정확한 건설공사 시공평가 정보 공유를 가능케 만든 모범 사례"라며 "건설안전 확보와 품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시기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정작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검증 등을 이유로 적정 수

준의 간접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국 부족한 예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에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가격협상 기준을 유사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로 설정했다.

예정가격 대비 9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기술형입찰과 달리 종합심사낙찰

제의 낙찰률은 80% 안팎에 머물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은 예산 절감을 내세워 최대한 낙찰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전환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추가 투입과 예산 절감이 맞물리는 문제"라며 "예산의 추가 확보가 확실하고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담보할 수 없는 틀 안에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순수내역입찰 참가업체 중심제의 절반 수준

시험사업 불확실성·설계비용 부담 탓

순수내역입찰의 참가업체 수가 종합심사낙찰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일 순수내역입찰 방식의 '하남갑일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를 접수한 결과 총 21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같은 날 이뤄진 중심제방식의 '인천가정 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에 총 38개사가 PQ서류를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업계는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과 첫 시험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PQ 통과업체는 다음달 1일 현장설명회 후 비용이 수반되는 견적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실제 입찰 경쟁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업 등 하도급업종 '상향식 근로감독' 도입

건설업 등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사업장에 '상향식(Bottom up) 근로감독'이 도입될 전망이다. 하청업체 근로감독부터 시행해 임금체불 등 문제가 확인되고, 그 문제에 원형 책임이 있는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1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을 전국

현장이 신속히 이행토록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 제도가 일자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하도급업종의 상향식 근로감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장에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또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 소통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기자 ysys@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손실보상 범위 확대

하도급사가 임금·자재대금 등 체불때 원사업자 직접지급 가능
건설협회 “원·수급자간 공정거래 관계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돼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원·수급자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이달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보상범위 확대 및 구제화 △수급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한 공사금액과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대해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했다.

개정 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불렀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는 평가다. 대

한건설협회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으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해소돼 그동안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원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금지 관리의무를 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수급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조치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임대자에게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체불할 경우 원사업자가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건설협회는 “수급사업자의 대금 체불에 대해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를 강화했다. 관련서류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이다.

더불어 △수급사업자에 공사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의무화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술자)의 착공 전 원사업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 미인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인정 △계약해제 후 수급사업자가 미리 지급받은 대금 반환과 미반환 시 지연이자(6%) 부과 등이 반영됐다.

한성준기자 newspia@

뉴스 돌 보기 계약제도개선... 정상작동되려면

工期연장 간접비 지급 예비비 등 예산확보 장치 필요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 낙찰률 아닌 공사 원가로 접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 마련은 분명 제도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에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은 법률적으로 가능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국기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공기연장 간접비가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지급 근거가 없는 탓에 기재부와 의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꺼려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부가 이번에 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간접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정부와 발주기관이 간접비 추가 지급에 선뜻 나설 리 만무하다.

이에 따라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사가

간접비를 선투입하고 후후 금리를 얻어 지급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건설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와 발주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보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장기계속공사에선 간접비 추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예비비로 조치하거나 건설사가 먼저 부담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갚아나가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의 약발도 예산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의 최대 압축은 가격협상 때 유사공사의 총합심사나찰제 낙찰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각각 90%대와 80%선을 보이고 있는 기술형입찰과 총합심사나찰제의 낙찰률 차이가 당장 급한 불이지만 정작 문제는 수의계약의 적정공사비를 다른 공사의 낙찰률로 결정하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공사비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낙찰률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주기관이 충분한 원가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가격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